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87

발의연월일: 2025. 1. 16.

발 의 자:김상훈·김소희·이종욱

김형동 • 박충권 • 고동진

김승수 · 강대식 · 박수영

김선교 · 송언석 · 이달희

권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0,411명이였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17,817명으로 약 71%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2023년 113건으로 2019년 대비 9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약물 복용 후 운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을 뿐 약물복용 후 운전하는 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단속 규정이나, 약물 복용여부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약물 복용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취소정지 등 규정이 미비하고, 처벌기준이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낮아 약물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이 단속 시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운전에 따른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 및 결격기간을 규정하고, 상습적 약물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등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148조의2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45조"를 "제44조의2ㆍ제45조"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4조의2, 제45조"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

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중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제44조의 2에 따른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 외에 과로, 질병"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또는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4조의 및 제45조"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또는 제45조"로 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5조"를 "제44조의2제1항·제2항, 제4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44조제1항·제2항,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44조제1항·제2항,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제6호나목·다목 또는 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라.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마.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를"을 "제44조의2제1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 4의3. 제44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 니한 경우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2.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 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워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	26
항제3호·제44조· <u>제45조</u> ·	제44조의2
제54조제1항·제148조·제14	<u>• 제45조</u>
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	
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	
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	
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	
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	
다.	
27. ~ 34. (생 략)	27. ~ 34. (현행과 같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 ①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u>제45조</u> , 제47조, 제50조의3, 제9	제44조의2, 제45조
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 략) <u><신 설></u> ______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 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 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 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

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 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 되는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 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ス])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제44조의2에 따른 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 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 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 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생 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44조, 제44조의2 또는 제45조	세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 ②	
· ②	
· ②	
조의2 및 제45조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략)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 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 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 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행과 같음)
② <u>제43조, 제44조,</u>
제44조의2 또는 제45조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 가. 제44조제1항・제2항, <u>제4</u>
 <u>5조</u> 또는 제46조를 위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이르게 한 경우

다. • 라. (생 략)

4. <u>제43조부터 제46조까지</u>의 규 4 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1.・2. (현행과 같음)
3
가 <u>제44</u>
조의2제1항·제2항, 제45
<u>조</u>
나. <u>제44조제1항·제2항, 제4</u>
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다. • 라. (현행과 같음)
4. <u>제43</u> 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또는 제46조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 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 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 소된 날부터 4년

- 5. 제6호나목 또는 다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 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 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 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 다. (생 략)

- 107 19 19 19
5. <u>제6호나목·다목 또는 마목</u> -
6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u>라. · 마.</u> (생 략)

7. ~ 10. (생 략)

③ (생략)

개정법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 · 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 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

- 라.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 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 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 다)한 경우
- 마.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 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 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u>바.•사.</u> (현행 라목 및 마목 과 같음)

7.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①

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 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 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 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 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 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 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 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 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 1. ~ 3의2. (생략)
- 4. <u>제45조를</u>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u>利</u> 4
호, 제4호의2, 제4호의3, 제7호-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44조의2제1항을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신 설>

<신 설>

5. ~ 23. (생략)

② ~ ④ (생 략)

개정법률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 략)

<신 <u>설></u>

4의2.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 항 후단을 위반한 사람이 다 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4의3. 제44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 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 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법률 제20544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

>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4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 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 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 ①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신 설>

<신 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⑤</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u>-----

----.

- 1.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 2.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